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에 소재한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배제함으로써 미분양주택 수급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4. 29. ~ 6.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2025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4조제1항제2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 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 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 다)을 말한다. 1. ~ 25. (생 략) <u><신 설></u>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 ----- ----- ----- -----. 1. ~ 25. (현행과 같음) 2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 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 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 일까지 취득(2025년 12월 31 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 한다)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 에 있는 미분양주택(해당 주 택을 취득한 날 이후 해당 주 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 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 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정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13